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2024. 3



목 차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서류 및 확인사항> 요약본	1
I. 출판사 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3
II. 출판사 신고 관련 FAQ	5
- 출판사 신고 및 범위 / 5	
- 1인 무점포 출판사 신고 / 9	
- 건축물 용도 / 11	
- 민원서류 및 기타 / 13	
III. 인쇄사 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15
IV. 인쇄사 신고 관련 FAQ	17
- 인쇄사 신고 및 범위 / 17	
- 건축물 용도 / 19	
- 민원서류 및 기타 / 20	
V.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처리 기준 (법적 근거)	23
VI.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관련 법령 규정	27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서류 및 확인사항〉 요약본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진행 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새울 행정시스템 입력 → ④신고확인증(신고필증) 발급 → ⑤신고·폐업 등 상황 보고

출판사 신고

- 출판사(신규)신고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출판사 신고 가능 여부 파악을 위한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확인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건물인 경우 생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신고인 신분증 / (대리인 경우)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담당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용도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1인 무점포 출판사인 경우 자택 운영 가능)

※ 1인 무점포 출판사: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출판사

2.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자가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3. 상호 결정 시 소재지 관할 내에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확인

※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https://book.mcst.go.kr>)

※ 처리기간 : 3일

출판사 변경신고

- 출판사(변경)신고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확인서류

- 기존(舊) 출판사 신고확인증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건물인 경우 및 상호만 변경 시에는 생략)
- (대표자 변경 시) 양도·양수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이 아닐 경우 생략)
- (대리인 경우) 신고인 신분증 및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주소 변경신고 중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사항은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전출 처리 요청
(유선으로 주소 전달 후 새울에서 전입 자료 조회 후 처리)

<담당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용도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1인 무점포 출판사인 경우 자택 운영 가능)

2.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자가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 처리기간 : 3일

인쇄사 신고

- 인쇄사(신규)신고서(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인쇄사 신고 가능 여부를 위한 건축물의 소유·사용권 및 인쇄시설 보유 여부에 관한 서류 확인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건물인 경우 생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인쇄시설 관련 자료(인쇄시설 내역서, 인쇄시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물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고인 인쇄시설 보유 확인필
- 신고인 신분증 / (대리인 경우)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담당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용도 → 2종 균린생활시설(제조업), 공장
2. 환경 관련 사항 확인(인쇄사) : 인쇄판(CTP 등) 생산시설을 보유한 경우, 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사항 ※ 환경 관련 부서에 확인
3.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자가 소유자 일치 여부
4. 상호 결정 시 소재지 관할 내에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확인
※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https://book.mcst.go.kr>)

※ 처리기간 : 3일

인쇄사 변경신고

- 인쇄사(변경)신고서(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확인서류

- 기존(舊) 인쇄사 신고확인증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건물인 경우 및 상호만 변경 시에는 생략)
- (대표자 변경 시) 양도·양수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이 아닐 경우 생략)
- (대리인 경우) 신고인 신분증 및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주소 변경신고 중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사항은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전출 처리 요청
(유선으로 주소 전달 후 새울에서 전입 자료 조회 후 처리)

<담당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의 용도 → 제2종 균린생활시설(제조업), 공장
2. 환경 관련 사항 확인(인쇄사) : 인쇄판(CTP 등) 생산시설을 보유한 경우, 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사항 ※ 환경 관련 부서에 확인
3.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자가 소유자 일치 여부

※ 처리기간 : 3일

출판사 / 인쇄사 폐업신고

1. 폐업신고서
2. 출판사 신고확인증, 인쇄사 신고필증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3. 신고인 확인(신분증 복사) 및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본인 확인 필수 및 팩스 번호 확인(추후 폐업 처리 공문 송부) / 신청 수수료 없음

□ 목 적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신고인 편의 제고

□ 업무 개요

1. 법적 근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 법 제9조(신고),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및 제28조(과태료)
- *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
- * 시행규칙 제2조(신고), 제3조(변경신고),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 및 별지 제1, 2, 3호 서식, 제6조(폐업신고)

2. 신고 개요

- (신고 대상)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 (처리기관) 출판사 소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부서
- (제출 서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확인증 첨부
- (처리기한) 3일

3. 신고 절차



1) 접수

- 신규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 변경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신고확인증 첨부)
- 폐업 : 출판사 신고확인증 반납

※ 출판사의 소재지 변경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입지에서 하여야 하나, 신고인이 전출지에서 신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함.

2) 검토

- 개인 출판사의 신고
 - 본인 : 신분증,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대리인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법인 출판사의 신고
 - 본인 :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대리인 : 법인등기부등본,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건물인 경우 생략)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 출판사 신고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가능
-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는 <건축법> 상 용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음.

3) 새울 행정시스템 입력

4) 신고확인증(신고필증) 발급

- 출판사 신고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 ※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5) 신고·폐업 등 상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분기별 신고·폐업 등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특별자치시·도 포함)는 관할 시·군·구의 보고 상황을 취합,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1. 출판사 신고 및 범위

1) 출판사 명칭을 중복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

소재지 관한 특별시·광역시·시·군·구에서 동종 업종의 상호로 등록하지 못합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 출판사 신고에 대하여 출판사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출판사 명칭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다만, 출판사의 명칭은 <상법> 등 다른 관계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는 바, <상법> 제22조에서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에 대해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구에서 동종 업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타 출판사 명칭이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된 것이라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출판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한편, 출판사 상호를 지역 제한 없이 보호받고 싶다면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공공기관 등과 유사한 명칭으로 출판사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

공공기관 등과 유사한 명칭으로 출판사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예규인 <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3조 제5호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등 일부 공공기관 법률에는 직접적으로 이들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출판사가 공적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상표법> 등의 적용 문제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 상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처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습니다.
- 다만, 대법원예규인 <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3조 제5호는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환경공단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일부 공공기관 법률에는 직접적으로 이를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법령 등에 비추어, 공공기관 등과 유사한 이름을 출판사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인에서 출판사 신고를 하고자 할 때 법인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법인명과 출판사 신고확인증의 상호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에서 출판사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상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상호가 다른 경우 세무서에서 법인명과 출판사 상호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개인사업자가 출판사를 추가로 신고를 할 때도 상호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법인사업자등록증상 상호, 법인명과 출판사 신고확인증상 상호가 다를 경우 세무서에서 상호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신고확인증을 변경해오라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4) 출판사의 경우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출판사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소재지에서 다수의 출판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출판사 신고는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공간을 분할하여 특정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5) 외국인의 경우도 출판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에 따른 별표1의2에서 정한 비자에 따라 국내에서의 출판업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비자 종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출판사 신고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은 없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정한 비자 종류에 따라 국내에서의 출판업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참고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령>)

6) 출판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시 진행 절차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면 신고인은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관할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판사 변경신고서 서식에서는 개인 혹은 법인 대표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그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인 출판 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 방식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출판사 신고 후 신고확인증 미수령 시 과태료 부과 여부

신고확인증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자동 폐업처리 되거나 신고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출판사 신고의 법률효과는 신고확인증이 신고자의 수령여부와는 무관하게 관할 행정청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확인증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 폐업처리 되거나 신고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행정청의 신고 수리 또는 그 거부 의사는 당해 신고확인증의 교부여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고확인증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법률 효과가 유효하게 발생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할 행정청에서 신고확인증을 수령하기 바랍니다.

8) 지사에서 본사 제작 교재로 방문 수업 시 지사의 출판사 신고 대상 여부

본사(점)에서 제작하는 교재 등을 가지고 지사(점)에서 방문수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사는 출판업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편집·복제하여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정가, 국제표준 자료번호 등을 표시한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판사란 이러한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뜻합니다.
- 따라서 본사의 제작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경우, 지사는 출판사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종교시설 내에서 교재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출판사 신고 여부

종교시설 내에서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교인 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가 선교 등의 목적과 결부되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출판사의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출판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간행물은 형식상으로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시하여 만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내용상으로는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출판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작·판매할 경우에는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자에 해당됩니다.

10) 회사에서 다이어리 종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고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데, 따로 출판사 등록을 하는지 여부

단순한 다이어리만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출판사 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며, 출판이란 간행물(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및 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 등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그러므로, 단순한 다이어리만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간행물로 볼 수 없습니다.

2. 1인 무점포 출판사 신고

1) 주택에서 1인 무점포 출판사 신고 여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주거 활동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출판업을 병행하는 경우 1인 무점포 출판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는 <건축법> 상 용도 규정(<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적용하지 않고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 1인 무점포 출판사 허용지침(출판산업과-45, 2005.1.7)

2) 1인 법인 무점포 출판사 신고 가능 여부

1인 법인 무점포 출판사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법인으로 받기 위해서는 주소 및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주거시설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 업무 공간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판사 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소관 지자체에서는 법인이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단독(공동) 주택 내에서 주거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것으로 반드시 정해진 건축물 용도 내에서만 사업해야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1인 법인 무점포 출판사 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주거시설 내에서 독립적으로 출판사를 운영할 경우 설계도면에 의거 주로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을 지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함.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전대의 제한)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함.
 - 예를 들면 아파트 30평을 임차했을 경우, 방 하나는 3~4평 정도입니다. 이 경우 아주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전대제한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632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는 전대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미성년자의 1인 무점포 출판사 신고가 가능 여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 미성년자인 경우 출판사 신고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은 없으나, 미성년자의 영업행위 관련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28조)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혼자 세무서 방문 시, 부모님 동의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집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부모님과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
 - 신분증

4) 공용오피스, 소호사무실 및 속인숍(shop-in-shop)에서 출판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합니다. 공용오피스, 소호사무실, 속인숍 등의 주소지로 출판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신고는 주소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경우 주소와 함께 공간 사용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도면에 사용 공간의 면적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3. 건축물 용도

1) 건축물 용도에 따른 출판사 신고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 따라 출판사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에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설립할 때 건축물 용도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 한해서만 건축물 용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주거 활동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출판업을 병행하는 경우 1인 무점포 출판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1인 무점포 출판업이 건축물의 특정 주된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대규모화, 집단화 등으로 인하여 주된 용도의 기능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위한 창고, 사무실, 영업장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용도 분류 없이 주된 용도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출판사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법에서는 출판사의 입지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 규정에 따라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설립이 제한됩니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는 직접 주거 활동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출판업을 병행하는 경우 1인 무점포 출판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1인 무점포 출판사 허용지침(출판산업과-45, 2005.1.7)

3) 교육, 연구시설 건축물에 출판사 신고 가능 여부

교육, 연구시설이 일반업무시설이라면 출판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사의 입지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 따라 출판사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설립이 제한됩니다.

4)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출판사 신고 가능 여부

출판사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이 입주할 수 있고, 입주 가능한 업종코드를 보면 지식산업에 출판업 코드(581)가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규정에 의거 ①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 가능합니다.
- 지식산업센터에서 출판사 신고가 가능하며, 출판업 코드(581)를 구체적으로 보면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58111), 만화 출판업(58112), 기타 서적 출판업(58119), 신문 발행업(58121),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58122), 정기 광고간행물 출판업(58123),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90) 등입니다.
- 기존의 아파트형 공장 명칭과 현재의 지식산업센터 명칭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5) 출판사가 전입하는 경우 이사를 마친 상태에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을 때

신고인이 이사 전에 반드시 건축물 용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 이후에 용도 변경이 안 된다면 출판사 운영이 어렵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 규정에 따라 출판사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설립이 제한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는 직접 주거 활동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출판업을 병행하는 경우 1인 무점포 출판사 운영이 가능 하므로, 이사를 간 건축물의 용도가 이에 맞지 않고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출판사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 출판사가 건축물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경우

용도에 맞는 건축물로 이전, 또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가 규정에 맞지 않는 곳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은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79조의 시정명령, 제80조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용도에 맞는 건축물로 이전하거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민원서류 및 기타

1) 출판사가 운영을 폐지한 때에 직권폐업 처리 가능 여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3,4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3, 4항 직권말소 조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 운영을 폐업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 의견청취 등 관련 조항 준용

2) 1인 무점포 출판사 신고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진행할 때 필요서류

개인인 경우 신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이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대표자 변경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증빙하는 서류를 소관 지자체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사 변경이 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출판사 (변경)신고 시 온라인 신고 허용에 대한 부분

행정안전부와 ‘정부24’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판사 (변경)신고 및 신고확인증의 수령 등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새울, 정부24 등 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시스템 개편 또는 구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 출판사 (변경)신고의 온라인 신청 및 출판사 신고확인증의 온라인 수령이 가능하도록 ‘정부 24’ 시스템 개편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 관련 협의를 거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5) 출판사 신고번호 변경 후 이미 출간된 단행본의 출판사 신고번호 변경 여부

출판사 신고번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출간된 출판물 판권에 표기된 신고번호는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출판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지자체에서 출판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고번호가 부여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 이미 출간된 간행물에 대해서 새로운 신고번호를 소급하여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으로 이미 출간된 단행본에 대해서 출판사 신고번호 변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목 적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에 관한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신고인 편의를 제고

□ 업무 개요

1. 법적 근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 * 법 제12조(신고),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및 제15조(과태료)
 - * 시행령 제14조(신고), 제15조(변경신고),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제17조(신고 상황의 보고), 제17조의2(폐업신고) 및 별지 제1, 2, 3호 서식

2. 신고 개요

- (신고 대상) 인쇄사를 경영하려는 자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 (처리기관) 인쇄사 소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부서
- (제출 서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인쇄사의 이름 및 소재지
 -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인쇄시설 관련 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필증 첨부
- (처리기한) 3일

3. 신고 절차



1) 접수

- 신규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 변경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신고필증 첨부)
 - 폐업 : 인쇄사 신고필증 반납
- ※ 인쇄사 면적 500㎡ 이상이라면 공장등록 필요 (과태료 대상일 수 있음)
- ※ 인쇄사의 소재지 변경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입지에서 하여야 하나, 신고인이 전출지에서 신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함

2) 검토

- 개인 인쇄사의 신고
 - 본인 : 신분증,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대리인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법인 인쇄사의 신고
 - 본인 :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대리인 : 법인등기부등본,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인쇄시설 관련 자료 및 장비 확인
 - 인쇄시설 매매계약서, 임차계약서, 시설증명원 등 물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건물인 경우 생략)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 인쇄사 신고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부지에 가능

3) 새울 행정시스템 입력

4) 신고확인증(신고필증) 발급

- 인쇄사 신고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신고필증 발급
- ※ 등록면허세 납부 (지자체마다 등록면허세가 상이할 수 있음)

5) 신고·폐업 등 상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분기별 신고·폐업 등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특별자치시·도 포함)는 관할 시·군·구의 보고 상황을 취합,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1. 인쇄사 신고 및 범위

1) 인쇄사 신고 시 물적 시설의 범위

물적 시설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윤전인쇄기 등을 포함하여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이 범위에 속합니다.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인쇄시설)에 의하면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인쇄시설 중 “물적 시설”이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 제본(제책)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말합니다.

※ 시행령에서는 윤전인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물적 시설에 윤전인쇄기도 포함됨.
인쇄기 종류에 대해서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print.or.kr/bbs/board.php?bo_table=B43)

2)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동일 장소에서 출판사와 인쇄사의 겸업 가능 여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시행령)에 의한 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상의 용도별 건축물 분류기준에 적합하다면 인쇄사 겸업이 가능합니다.

-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동일인에 의한 동일 장소에서의 출판사와 인쇄사 겸업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겸업도 가능하나, <건축법 시행령> 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인쇄사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간행물의 구체적 범위

간행물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 자료번호(ISBN, ISSN, 전자출판물은 콘텐츠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음) 등을 표시하여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전화번호부나 관광안내책자, 지도가 간행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단순한 제본(제책) 등의 업무는 인쇄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후 인쇄업 가능 여부

전화번호부나 관광안내 책자, 지도 등이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간행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행물을 발행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제본(제책) 업무는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 간행물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전자 출판물은 콘텐츠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음) 등을 표시하여 만든 것입니다.

5) 제품 판매를 위해 인쇄할 경우 신고 대상 여부

해당 제품이 간행물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간행물(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간행물이 아닌 단순히 제품 포장 인쇄 등을 위해서 인쇄하는 것은 인쇄사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신고)에 의하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출판사, ISBN/ISSN)을 표시하여 만든 것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행물이 아닌 제품 제작 등을 위해서 인쇄한다면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타 법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규정과 관련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부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인쇄사의 물적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대상 여부

물적 시설만 변경할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의하면 변경신고는 신고한 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에는 인쇄사의 물적 시설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물적 시설만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7) 인쇄사 물적 시설 중 제본(제책)시설의 범위에 대한 부분

제본(제책)기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쇄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제본(제책)시설 등의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후가공 시설에 해당되어 인쇄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8) 기존 인쇄시설을 공동 사용으로 다른 인쇄사 신고 가능 여부

동일 인쇄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인쇄사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쇄사는 인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동 시설을 공동 사용하면서 별도의 인쇄사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만일 동일 장소에서 추가로 인쇄사 신고를 진행할 때는 별도의 인쇄시설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9) 인적·물적 시설이 2개 자치단체에 분할되어 있을 경우

인쇄사는 물적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1항에 의하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 용도

1) 건축물 용도에 따른 인쇄사 신고 가능 여부

인쇄사의 입지에 대하여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상 건축물의 용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이고,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제조업소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상 용도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구의 건축 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창업보육센터는 도심 공장형태로 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증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사 신고 가능 여부

인쇄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공장으로 용도가 분류되어 있으며, 창업지원 등과 관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쇄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쇄사 신고는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이외에도 관련 법규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관청에서 그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인쇄사 신고 가능 여부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이 입주할 수 있고, 제조업의 경우 인쇄와 관련되어 있는 제조업 코드(16, 17, 18번)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폐수 등의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항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규정에 의거 ①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 가능합니다.
- 제조업 코드에서 인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17),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18) 등입니다. 해당 제조업 코드에 해당 된다면 인쇄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쇄사 신고는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이외에도 관련 법규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관청에서 그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민원서류 및 기타

1) 인쇄사가 운영을 폐지한 때에 직권폐업 처리 가능 여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3, 4항 직권말소 조항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출판사(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인쇄사 운영을 폐업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 의견청취 등 관련 조항 준용

2)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인쇄사에 대한 행정처분(직권폐업 등) 가능 여부

신고 시 인쇄시설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지만 법정 서식에 의한 신고 사항이 아니므로, 현재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서 행정처분(직권폐업 등)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인쇄사의 물적 시설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인쇄시설을 말하며, 인쇄사 신고 시에 이를 인쇄시설 중 하나만 갖추고 있으면 신고 수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의 법정 서식에 의한 신고 사항은 아니므로, 현재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서 행정처분(직권폐업 등)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과거의 규제 또는 단속에서 벗어나, 인쇄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제정된 것임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해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일반업체 등에서 지원을 받아 관광, 제품 등 안내 책자를 기획하여 인쇄사에 제작을 의뢰, 판매하는 행위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전단지(팸플릿) 등과 같은 홍보물을 인쇄한다면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한 인쇄업인 경우에 한하여 인쇄사 신고대상이 됩니다.

스티커, 명찰, 명함제작 또는 금박을 찍는 곳은 인쇄사 신고대상이 아니며,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간행물’을 인쇄하지 않는다면 인쇄사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인쇄기획업무만 하는 ‘인쇄기획사’의 경우 인쇄사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의거 체납자(인쇄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서(공문)가 관할 세무서에서 왔을 때, 출판사 및 인쇄사의 관허사업제한에 대한 처리 방법

출판사 및 인쇄사는 신고 업종으로 되어 있으나, 무신고 영업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등으로 미루어 그 신고 수리는 금지된 영업활동에 대한 자유를 회복하는 수의적 처분으로 볼 수도 있는 바, 관허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허 사업을 제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 및 청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 ‘관허사업’이란 허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히, 납세자가 3회 이상, 그 국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지방세인 경우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 이 경우,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청은 관할세무서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특히 관허사업 제한의 경우에도 <행정법> 상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과 과잉결부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바, 납세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업무처리 기준

- (출판사 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 제9조(신고),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및 제28조(과태료)
 *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
 * 시행규칙 제2조(신고), 제3조(변경신고),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
 제6조(폐업신고) 및 별지 제1, 2, 3호 서식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출판사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포함)하여야 함.

○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정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신고확인증 첨부)하여야 함.

- (인쇄사 신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 법 제12조(신고),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및 제15조(과태료)
 * 시행령 제14조(신고), 제15조(변경신고),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제17조(신고 상황의 보고),
 제17조의2(폐업신고) 및 별지 제1, 2, 3호 서식

○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인쇄사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서식(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포함)하여야 함.

○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의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정 서식(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신고필증 첨부)하여야 함.

1. 출판사 및 인쇄사 명칭

- (상호에 대한 지도·권장)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명칭(상호) 사용에 관한 지도·권장 사항

- (상호의 사용)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명칭은 단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상호와 일치하도록 지도, 권장하여야 함(※ <상법> 제21조).

【상법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상호의 동일성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내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확인 또는 출판사·인쇄사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

-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상법> 제22조).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호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상표의 등록)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상호를 지역제한 없이 보호받고 싶다면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여야 함(※ <상표법> 제50조)

【상표법 제50조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 (1인 무점포 출판사의 신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는 1인 무점포 출판사 운영이 가능

◆ 1인 무점포 출판사

- 1인 무점포 출판사는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물적 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 인적 용역 제공자와 유사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출판인)로 볼 수가 있음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등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는 <건축법> 상 용도 규정(<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적용하지 않고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음.

※ 문화관광부 1인 무점포 출판사 허용지침(출판인쇄산업과-45, 2005.1.7)

- 특히,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 개정으로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해서는 <건축법> 상 용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허용함.

※ 건설교통부 건축법령 검토 회신(건축기획팀-4892, 2006.8.7.)

○ (건축물의 용도 관련 안내)

○ (건축물 용도의 변경)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사 및 인쇄사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 규정에 따라 설립이 제한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출판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 / 인쇄사 : 공장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 따라 신고 수리가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또는 신고)를 거치도록 안내하여야 함.

○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고시로 출판사 등의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함.

○ (지식산업센터 관련 안내)

○ (지식산업센터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따른 ①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 가능

○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출판업 (코드:581)이 가능하며, 제조업의 경우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코드:18)으로 인쇄사 신고가 가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해당해야 함.

○ (소재지 변경신고)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소재지 변경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입지에서 하여야 하나, 신고인이 전출지에서 신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함.

○ 신고인이 종전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해당 관청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신고서를 접수처리한 후, 그 구비서류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자체 없이 전입지 관할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함.

3. 출판사 및 인쇄사 직권말소 및 폐업

○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 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가능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 의견청취 등 관련 조항 준용

○ 신고한 운영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 ⑤ (생략)

⑥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폐업신고 안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

○ (신고확인증의 반납)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신고한 출판사 운영을 폐업하면 자체 없이 신고 확인증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돌려주어야 함.

○ 출판사 및 인쇄사가 폐업하려면 관할 시·군·구와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일괄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

○ (신고·폐업 등 상황 보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분기별 신고·폐업 등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특별자치시·도 포함)는 관할 시·군·구의 보고 상황을 취합,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p> <p>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p> <p>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p> <p>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p>		<p>제2조(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 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p> <p>제3조(변경신고) 법 제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p> <p>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제2호서식과 같다.</p> <p>② 시장등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확인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p> <p>① 시장등은 법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p>
<p>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p> <p>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1항제1호 · 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등이 부과 · 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p>	<p>신고 및 말소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2.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1)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50	
나) 신고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70	
다)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0	
2) 법 제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10	
나) 변경신고를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0	
다) 변경신고를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50	
라)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0	
나. ~ 사. (생략)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출판사 []**신고서**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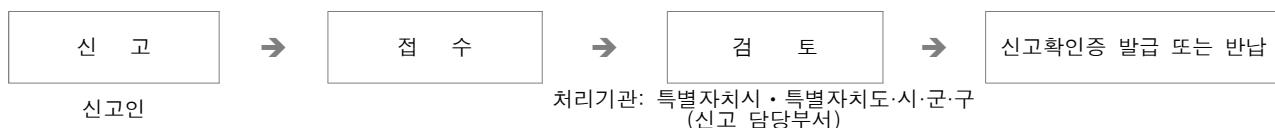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 원
------	-----------------------	---------------------------------------

유의사항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25.>

출판사 신고확인증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신고연월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판사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二〇一〇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25.>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 (분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출판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구분란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폐업, 직권말소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폐업 또는 전입된 경우에는 변경신고일란에 그 날짜를 적습니다.

행정기관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9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출판사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신고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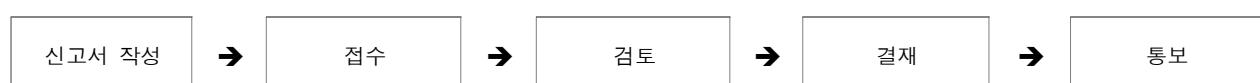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출판사 신고확인증 1부
-------------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	시행령
<p>제12조(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제14조(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제15조(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② 시장등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은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17조(신고상황의 보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제5항과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및 말소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3일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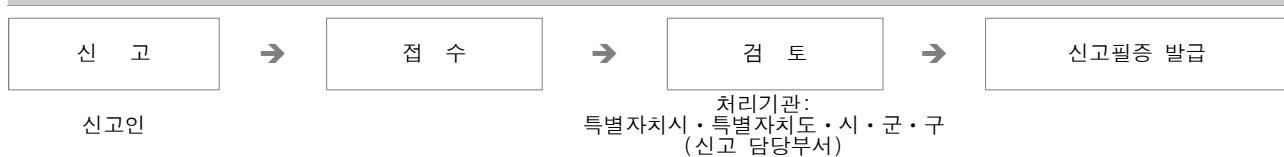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고번호 제 호

인쇄사 신고필증

명 칭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주소 :

신고 연월일 :

위와 같이 인쇄사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변경신고사항

처리 날짜	변경내용 및 그 원인	행정청 확인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2.>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인쇄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 (분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인쇄사 신고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구분란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폐업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변경신고 사항란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항을 모두 적습니다.

행정기관 |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 × 297mm [백상지(80g/m²)]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인쇄사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신고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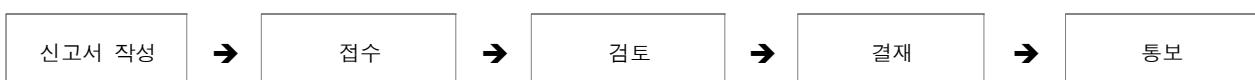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